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
2025. 2. 13.(목) 10:00

# 제25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 
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(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소관)



**복지건설위원회**  
전문위원 추병수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668호
- 나. 제 출 자 : 윤영희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5. 1. 23.
- 라. 회부일자 : 2025. 1. 23.

## 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종사자의 복지 등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앞장선 장기요양기관의 공적을 치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처우개선 사업 등 신설(안 제6조제1항제4호,제5호).
- 나. 표창 신설(안 제8조의2).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개정 이유

본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의 건강한 근로 환경과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 내용

#### 1) 처우개선 사업 등 신설(안 제6조제1항제4호,제5호).

-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
-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

#### 2) 표창 신설(안 제8조의2).

- 우수 기관에 대한 표창 수여를 신설함

### 다. 검토의견

- 노인요양이 필요한 대상자는 늘어나는 반면 요양보호사들의 업무환경은 개선되지 않아 현장에서 인력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됨.

※ 장기요양기관 종사자(2025년1월 기준)

(단위 : 개소 / 명)

구 분	시설	인 원								
		소 계	사 회 복지사	간호사	간 호 조무사	요 양 보호사	물 리 치료사	작 업 치료사	영양사	기타
합 계	93	2,923	115	7	56	2,651	2	9	5	78
시설급여	23	483	34	2	43	336	2	7	5	54
재가급여	70	2,440	81	5	13	2,315	0	2	0	24

- 본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 관계법령

## □ 노인장기요양보험법

[시행 2025. 1. 3.] [법률 제19888호, 2024. 1. 2., 일부개정]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(이하 “노인성질환예방사업”이라 한다)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2. 11.>

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 5. 29.>

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·보급할 수 있다. <신설 2018. 12. 11.>